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2023년 전라북도 공기업 · 출연기관

-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교육자료 | 2023.08 - 2023.09



본 자료는 “2022년 전라북도 공기업 출연기관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01. 인권영향평가 및 동향	04
02. 인권영향평가 실행(지표개발 및 방법론)	14
03. 경영평가 관점의 인권경영	43
04.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47
05.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52
#. 타 기관 구제절차 운영사례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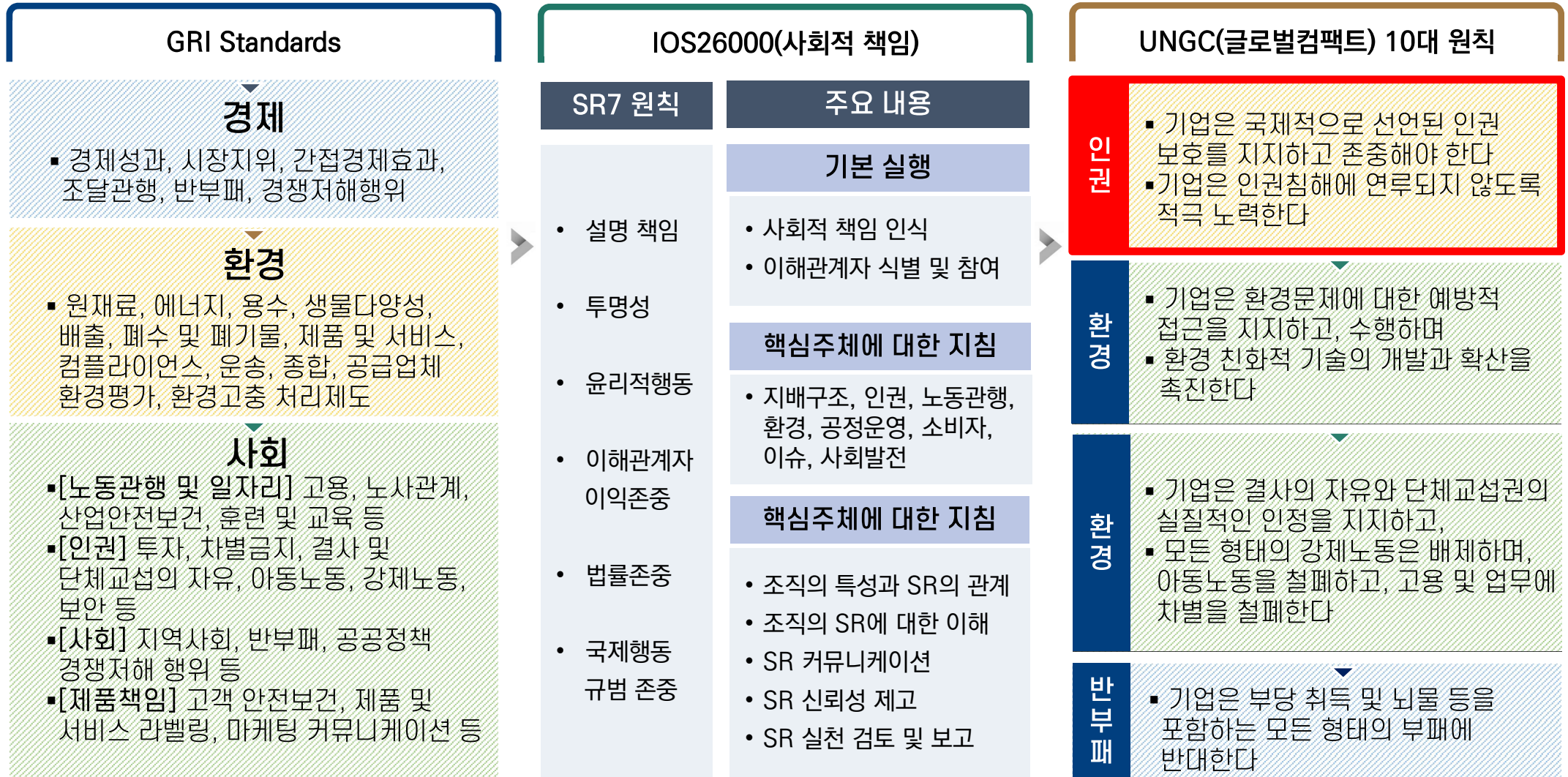
01 인권영향평가 및 동향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1) 인권경영 도입 필요성
- 2) 글로벌 인권동향
- 3) 인권경영의 이해
- 4) 인권경영 구축 절차
- 5) 인권영향평가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GRI(지속가능성), ISO26000(사회적 책임), 글로벌컴팩트(UNGC) 원칙 등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SG 경영이란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경영 방식임

Pre COVID-19

- Environmetn(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 Social(사회)

-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 Governance(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로비 및 정치 기부금, 기업윤리

COVID-19

- 사업장 셧다운
- 화석연료 수요 감소
- 대기환경 개선
- 비대면 확산
- 도시 및 국가 락다운
- 이동 제한
- 임직원 감염
- 지역사회 감염
- 고객 가치 변화
- 본원적 가치 중시
- 공급망 붕괴
- 비상경영체제

With, Post COVID-19

- 순환경제, 친환경 운송
- 직원 건강 및 안전 관리
- 내부회계관리 강화
- 기업지배구조공시 확대
- 협력사 기술 지원
- 사회공헌활동
- 순환경제
- 개인정보보호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스마트 공장 구축

ESG 경영 트렌드 가속화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 지침서 : 실사 가이드라인은 권고형, 참여형, 법제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이 인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

권고형		참여형		법제형
국제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3자 선언 등을 기반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지침”을 결의함 - 이는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수락국은 연락사무소 (NCP)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	G R I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로 작성하는 비재무 공시 체계	기업인권실사법 (안)
	-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지침을 기반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과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함 -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추진을 권고 하였으며, 공공기관을 TestBed로 민간 분야 확산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CHRB CHRB는 비영리기관의 주관으로 기업의 인권수준진단으로 산업별 상위 100개 기업은 자율적으로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	
국내			ESG ESG는 전문 조사기업의 비재무성과 조사 및 평가체계로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하여 진행	- UNGP, GRI, ESG 등을 기준으로 유럽연합 영토 내 위치한 기업은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책임, Due Diligence(인권실사)의 의무를 부여함 - 다국적 기업은 비재무 공시를 위한 추진력, 자금력을 보유하여 의무를 부여하며, 추진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구성됨
			I S O ISO26000, 37001, 37301은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인증체계	

최근 제정된 유럽의 기업 인권실사법(안)은 기업의 인권 실사 계획, 지원, 제약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사업장(유럽)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함

기업 인권실사법(안) 구성 및 주요 항목

분류	조항	
일반	제1조 (주제 및 목적)	제3조 (정의)
실사 계획	- 제2조(범위) - 제5조(노동조합의 참여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 제7조(비재무정보공시) - 제11조(실사 과정에 대한 책임) - 제13조(산업 부문별 실사 실행 계획) - 제16조(지침)	- 제4조(실사 계획) - 제6조(실사 계획의 공표 및 소통) - 제8조(실사 계획의 평가 및 검토) - 제12조(실사에 관한 전문성) - 제14조(감독)
구제	- 제9조(고충처리제도) - 제17조(중소기업과 극소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	- 제10조(사업외적 구제) - 제18조(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협력)
조사 및 처벌	- 제15조(기업에 대한 조사) - 제19조(처벌)	제20조(민사 책임)
기타	제21조(수용)	제22조(발효)

인권경영 관련 조직 문화의 정착 과정

- 제2조 범위
 - 이 지침은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거나 유럽연합의 영토에서 설립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 제4조 실사 계획
 - 기업이 위험을 식별할 경우, 기업은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실사 계획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UNGPs의 Due Diligence 실행 체계, 국내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와 유사함
- 제16조 지침
 - 이 지침은 기업의 규모와 부문에 따라 비례성이 실사의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 제17조 중소기업과 극소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
 - 회원국은 중소기업 및 극소 기업이 지침을 구하고 실사 의무를 가장 잘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특정 포털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국가 및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 ” 으로 ‘임직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권 친화적인 경영’ 임

인권경영 3대 요소

국가의
보호 의무

기업,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피해자 구제

기업의
존중 책임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목표, 계획수립 및 구제수단 제공

구제 수단
제공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수단 운영
구제수단의 접근성 강화

-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결정으로 인권경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언해야 한다.
-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기업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기업은 인권경영 관련 정보의 공시시스템을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인권경영의 실천현황을 내외부에 보고해야 한다.
- 기업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해와 체계 구축의 가이드를 제공함

1단계

- ## ■ 인권경영 체계 구축

2단계

- ## ■ 인권영향 평가 실시

1. 기관운영(경영관리) 인권영향 평가
2.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

3단계

- **인권경영(사업) 실행 및 공개**

4단계

- 구제절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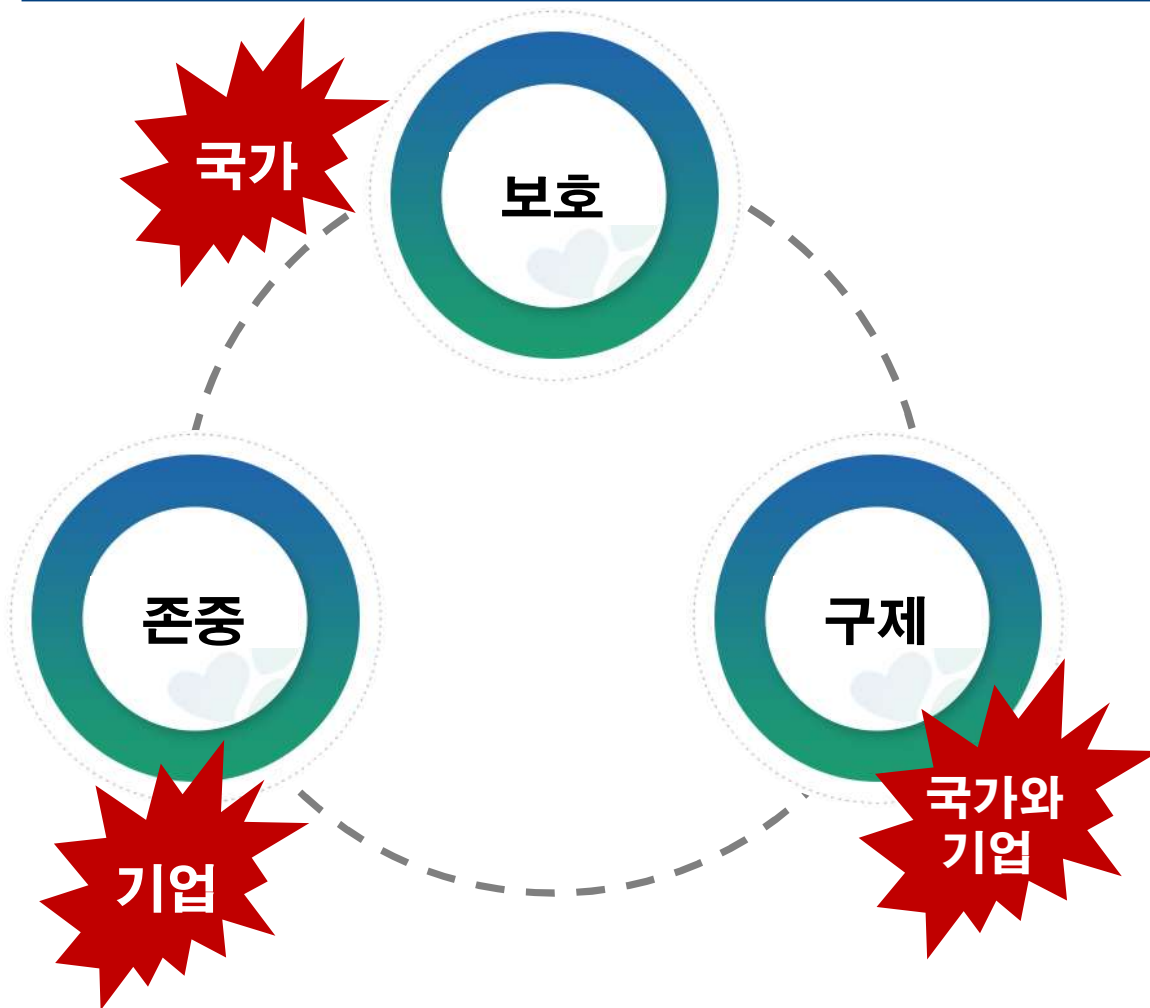


인권경영 구축 절차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의 4단계로 분류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주요 내용	인권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시작함	사업 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함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한 인권 현황과 개선사항을 기관 경영 및 사업에 반영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제공함
주요 활동	-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인권경영 교육계획 수립 - 인권경영 교육 실시 - 인권경영 체계구축 워크숍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경영 시행지침(규정) - 인권현황 실태조사 - 인권경영 선언문(헌장) 작성 -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 - 인권경영 선언문(헌장) 배포 - 인권경영 선언문(헌장) 선포식	- 인권리스크 정의 및 분석 - 주요사업 정의 및 지표 개발 - 최고경영진 보고 - 담당부서 지정 및 체크리스트 교육 - 체크리스트별 근거자료 작성 - 평가자료 제출 요청 - 평가 자료 입수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 인권경영 개선영역 도출 - 방지조치 계획 수립 -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 사업부서에 방지조치와 실행방안 전달 - 일정, 성과평가 방법, 평가지표 등 논의 - 인권경영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이해관계자 소통 및 간담회 개최 - 최종보고서 공개(공시)	- 기본 구제절차 분석 -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구제 기구 마련 - 구제절차 운영지침 제정 - 구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매뉴얼 작성 - 담당자 지정 및 구제절차 교육 - 구제절차 안내 및 홍보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침해 방지조치 시행을 목적으로 함

인권영향평가 개요



인권영향평가 목적

- ✓ 기관 경영 및 사업 추진상 부정적 **인권영향(인권리스크) 진단**
- ✓ 도출된 인권리스크에 대한 개선활동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 구제활동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국내에 도입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실사의 협의개념으로서 인권실사와 인권실태조사와는 아래와 같은 관계로 구성됨

